

우리나라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('13.1월 현재)

구 분	가업상속 공제	증여세 과세특례(사전상속)
세 율	상속·증여세율(상속세, 증여세 세율 동일) - 과세표준 1억원 이하 : 10% -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: 1천만원 + 1억원 초과금액의 20% -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: 9천만원 + 5억원 초과금액의 30% -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: 2.4억원 + 10억원 초과금액의 40% - 30억원 초과 : 10.4억원 + 30억원 초과금액의 50%	
공 (지 원) 도	①가업상속재산의 70% ②가업기간별 공제한도 - 10년 이상 100억원 - 15년 이상 150억원 - 20년 이상 300억원 ※ ①, ② 중 적은 금액	30억원 - 5억원 공제 - 25억원 10% 저율과세 ※ 30억원 초과금액 정상 세율 ※ 상속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 정산
지 원 상	①개인, 법인 모두 가능 ②조특법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2,000억 이하 기업 (음식업 포함)	①법인만 가능 ②조특법상 중소기업 (음식업 포함)
피상속인 (증여자) 가업기간	①가업 10년 이상 계속 영위 ②60% 이상 대표이사 재직 또는 최근 10년 8년 이상 재직	가업 10년 이상 영위
최대주주 지 분 율	50% 이상(상장 30%)	
피상속인 (증여자) 자 격	-	60세 이상 부모
상 속 인 (수증자) 자 격	①18세 이상 ②상속개시일 2년전 가업 종사 ③상속인 1인이 가업 전부 상속 ④신고기한(6개월)내 임원취임 ⑤상속개시일이후 2년6개월내 대표이사 취임	①18세 이상 ②신고기한(3개월)내 가업 종사 ③증여이후 5년내 대표이사 취임, 10년까지 대표이사 유지
사 후 관 리 (10년간)	①가업용자산 80% 이상 유지 ②상속인 가업 및 종사 유지 ③상속지분 유지 ④정규직 근로자수 1.0배 유지 (중견기업은 1.2배 유지)	①수증자 가업 및 종사 유지 ②증여지분 유지 ※ 지분, 가업유지시 가업상속 공제 적용
사후관리 불충족시	상속세 추징	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추징